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운영〉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86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운영	2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6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6.

(3) 회 부 일 : 2025.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료지원센터란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돼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고,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영역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장애 당사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나 지역사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 역시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만 규정하고 있어 동료지원센터 등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적 서비스 제공 기관 또한 부재함.

이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신설).

II. 검토 의견

1.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운영

□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독립적 생활 지원 및 조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운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69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69조의3(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 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 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독 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질 환자 동료지원센터(이하 “동료지 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하 여야 한다.</u> 1.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 상 담 및 지원 등 2.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제반 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익

	<u>보호 및 옹호</u> <u>3.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제반 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의 독립적 생활 지원 및 조력</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동료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 개정안에서 설립·운영의 근거를 두려 하는 동료지원센터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독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사 입법례로 「장애인복지법」 제54조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 다만, 개정안에서 열거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옹호나 독립적 생활 지원 및 조력과 같은 동료지원센터의 업무는 현재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²⁾, 동료지원 센터³⁾의 업무 등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지원 체계에서 동료지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들을 특화하여
명확히 규정한 후 서비스 공급 측면의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동료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완성되지 상황이고, 개정안 내 센터의 역할은 기존 정신건강 인프라의 역할과 유사하거나 중복됨.
행정안전부	○ 개정안에서의 지자체 예산 지원 의무화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 동료지원센터 운영 취지에 동의하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그 규정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정 필요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 지자체 여건 고려해 동료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예산 지원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정 필요하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동료지원센터의 역할이 사실상 동일함.
경기도	○ 개정안의 동료지원센터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동료지원센터의 법적 기능을 강화·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 동료지원센터 설립·운영 규정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유효 인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개연성이 있음.
제주특별자치시도	○ 동료지원센터 설립·운영 규정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사업들과 기능적 재정적 중복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제15조의4(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정신건강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통일되지 못한 현실에서 동료지원센터의 설립은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아직까지 동료지원에 대한 실제 활동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하여 동료지원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기대함.
한국정신건강 사회복지사협회	○ UN 장애인권리협약, WHO 퀄리티라이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동료지원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동료지원센터는 설치해야 할 당위성이 높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동료지원센터는 장기입원 중심의 정신의료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 주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 동료지원센터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문 의 처

02)6788-5498